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타부처 합의 전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는”을 “관리원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6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1호”를 “법 제22조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3호”를 “법 제22조제8항제3호”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1호”를 “법 제22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2호”를 “법 제22조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5호”를 “법 제22조제8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는”을 “관리원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9항”을 각각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1항”을 “법 제22조제12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4조

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다목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제28조제1항 관련)”을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	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인증취소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4호	인증취소		
마.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	법 제21조제1항 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사.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8호	인증 취소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제1호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		
차.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제2호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2개월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 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 생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제2호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타.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9항제1호”를 “법 제22조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9항”을 각각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제2호1)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라목제2호2)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9항제4호”를 각각 “법 제22조제10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법 제22조제9항 제5호란 중 “법 제22조제9항”을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법 제22조제9항 제6호란 중 “법 제22조제9항”을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22조제11항”을 “법 제22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법 제22조제9항 제7호란 중 “법 제22조제9항”을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아.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22조제10항 제8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업무 일부 지정 취소
-------------------------------------	----------------	----------------	----------------	-------------

별표 14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퍼목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 중 “법 제22조제11항”을 “법 제22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호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기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을 “기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등)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제 신청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 예정일(수입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출 예정일(수출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출품 예정일(출품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안전 확인 면제 사유	[] 법 제22조제8항제1호(연구·개발용 [] 수출용 [])		
	[] 법 제22조제8항제2호(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법 제22조제8항제5호		
통관 세관명			
사용 장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 제7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 제7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결과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수출 예정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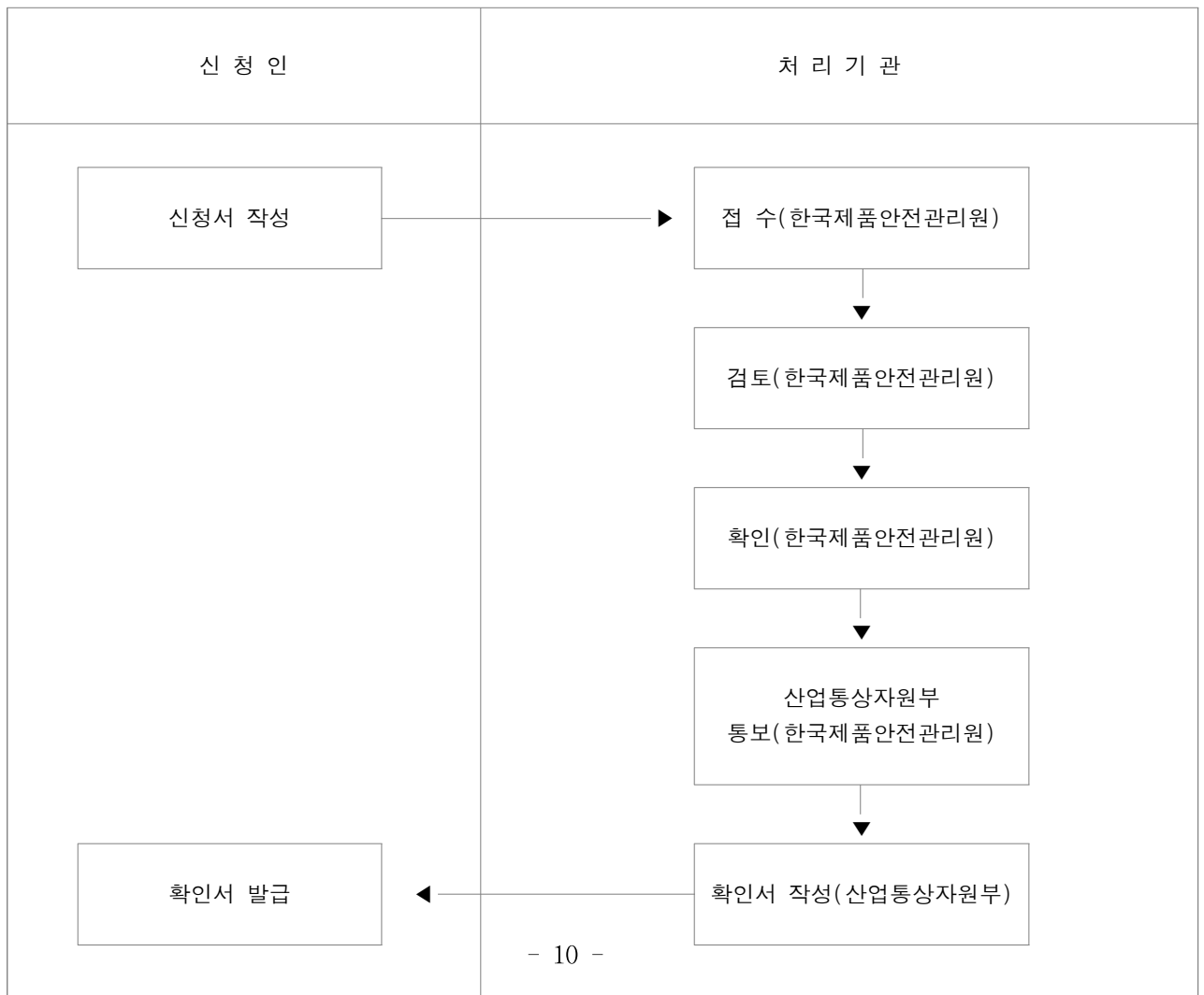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생략)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 6. (생략)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8.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 ----- ----- ----- ----- ----- ----- ----.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협회는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 관리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관리원은 -----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제4항-----

② -----
-----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한다.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검사설비를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
식-----

--.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 법 제22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22조제3항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
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
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검
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3.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
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
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
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
다)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
차) ①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
22조제6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4항-----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
차) ① ----- 법 제2
2조제7항-----

협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제7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2. 법 제22조 제7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검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 제8항-----
-----.

1. 법 제22조 제8항 제1호-----

2. 법 제22조 제8항 제3호 -----

----- 법 제22조 제3항-----

② -----

----- 관리원-----
-----.

1. (현행과 같음)

2. -----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면제 신청을 받은 협회는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7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보

-----법 제22조제8항제1호-----

3. -----

-----법 제22조제8항제2호-----

4. 법 제22조제8항제5호-----

③ -----
----- 관리원은 -----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

-----.

② ----- 법 제22조제10항-----

-----.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보

관 방법)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1항에 따라 안전확
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관 방법) ① -----
법 제22조제1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
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
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
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
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
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
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
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
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
품명 및 모델명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② (생략) ② (생략)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협회</u>에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u>협회의</u>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3. <u>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u>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관리원</u>-----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u>관리원</u>-----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